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6마6249 공유물분할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주영

원 심 결 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6. 자 2026나45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재항고인과 원고 2, 원고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1, 피고 2(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447호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5.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항고인,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항고인과 원고들은 2026. 1. 13.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은 2026. 1. 23. 재항고인과 원고들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통지서는 2026. 1. 28. 재항고인에게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재항고인과 원고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은 2026. 2. 2. 원심법원에 소송위 임장을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같은 날 위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6. 2. 9.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26. 3.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 하였다.

마. 원심은 2026. 3. 26. 재항고인이 2026. 1. 28.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항 소이유서 제출기간인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의2 제1항). 항소인이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 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는 필수적 공동소송을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 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이라고 정의하고, 공동소송인 간에 재판 결과가 합일적

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심리의 특칙을 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전부 또는 일부의 항소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등 그 이후의 항소심 심리 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심리 특칙이 적용된다.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항소심재판을 진행하여 항소심판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이므로, 항소심재판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진 항소인들 사이에서 항소인 1인의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그러한 소송행위는 다른 항소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는 항소인 중 1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다른 항소인이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어도 그 항소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재항고인과 원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는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재항고인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재항고인과 고유필수적 공동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미준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서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0. 8.

재판장 대법관 김 성 수

 대법관 오 경 미

주 심 대법관 권 영 준

 대법관 박 영 재